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김 경 우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본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현행 「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」 제17조제4항, 제5항의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기관을 감정평가업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과 동법 시행령 및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이 감정평가 등을 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할 수 있던 것을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나,
현행 조례는 재활용 물품에 대한 감정평가의 주체를 감정평가

법인 및 감정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, 상위법령에 맞추어 감정평가사에게도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본 의원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